

**2015학년도 제5차**  
**<제321차 이사회 회의록>**

2015. 12. 17.

**학교법인 대우학원**

---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5학년도 제5차

### 〈제32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5.12.17(목) 07:30 ~ 10: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5년 12월 9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김동연,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선용 (11인)
- 감사 : 배홍기 (1인)

##### ◎ 결석임원

- 이사 : 최 홍 (1인)
- 감사 : 문휘창 (1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임석철, 기획처장 이종섭,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4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행정처장 이상권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분 중 열한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증섭 기획처장·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1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5-373호(2015.12.09)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 승인(안), 의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 승인(안), 의안 제3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4호 의료원 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8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약학관 증축 승인(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1호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 의안 제12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13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 의안 제14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등 14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교육부가 2023년까지 입학정원 23만 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의 정원감축을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신청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이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청시 5%의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출한 감축계획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0명, 6명을 감축하여 2015년 정원대비 5%인 총 26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조건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학생정원 조정(안)

> 학생정원 감축 인원 : 2015학년도 정원 대비 5% 감축 ⇒ 26명 (520명 × 5%)

> 감축시기 : 2016학년도 20명, 2017학년도에 6명 감축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계	비 고
감축인원	-	20명	6명	26명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거주·통학여건 불만족에 의한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기숙사 중심 방과 후 교육활동 확대를 통해 전공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기숙사와 상호 연계가 가능한 위치에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기숙사는 연면적 약 432평, 건축면적 약 144평의 3층 건물로 계획하였으며, 1층은 헬스장, 도서실, 학생회실과 같은 학생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3층은 기숙사 30개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 및 공사 금액은 실시설계 후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명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이번 기숙사 신축을 통해 전체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까?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기숙사 신축 후 7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우리 대학의 1학기 등록인원이 약 900명으로 약 80%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1학기 신청 학생 중 150~200명 정도는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여 인근 원룸에 거주하거나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 주 인 육 : 부족한 학생 기숙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 신축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규 모	지상 3층	실시 설계시 변동 가능
면 적	건축면적 : 476.6㎡(144.2평) 연면적 : 1,429.9㎡(432.6평)	
소요예산	2,497,000천원	

#### 제 3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대학의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사 채용시 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임교원과 같이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학기 단위로 강의를 맡기는 것이 아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기에 관계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관 제48조에 '강사는 1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임용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의 문구를 신설하고, 제60조 제1항에 '강사' 를 삽입하여 인사위원회 임면 심의 대상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정관 제96조 및 별표는 아주자동차대학의 기술직 직원 정원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기술직 직원의 승진적체를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기술직 7급의 정원 1명을 6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개정(안)의 내용 중 강사법 시행관련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로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으면서 강사법의 폐기 또는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안)의 내용 중 강사법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법률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포하고자 하며, 만약 시행이 유예가 된다면 우리 법인 정관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강사법은 그 시행이 폐기 또는 유예가 된다면 해당 조문은 개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총장) 김동연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되, 고등교육법의 강사법 시행이 폐기 또는 유예가 될 경우 정관 제48조 및 제60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 동연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li>3.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ol>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u>강사는 1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임용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u>,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li>3.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ol>
<p>제6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심의에 관한 사항</li> <li>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인사위원회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li> <li>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li> <li>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li> </ol>	<p>제6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u>강사</u>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심의에 관한 사항</li> <li>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u>별표</u>와 같다.</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u>별표</u>와 같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 별 표 > 직원 정원			< 별 표 > 직원 정원
법 인	11명		법 인 (현행과 같음)
아주대학교	250명		아주대학교 (현행과 같음)
의료원	2,720명		의료원 (현행과 같음)
아주자동차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총 계	18명		총 계 (현행과 같음)
일반직	14명		일반직 (현행과 같음)
3급	2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3명		
8급	-		
기술직	4명		기술직 4명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6급 3명
7급	1명		7급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4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역시 고등교육법 강사법 시행 예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학교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재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안건 역시 강사법의 시행 유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총장) 김동연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되, 고등교육법의 강사법 시행이 폐기 또는 유예될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은 개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합니다.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의2(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1조의2(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 <u>강사</u>로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3. ‘<u>강사</u>’라 함은 <u>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학생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u></p>
<p>제2조(적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u>강사</u>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부 칙</u>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제 5 호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본 안건은 고등교육법의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제도 시행 문구를 신설하고 교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태 : 연구능력 향상이 절실한 조교수, 부교수 직급 교수님들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3년 복무 6개월 연구년을 시행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다 생각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타 대학들이 3년 복무 6개월 연구년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 문 길 주 : 이번 규정 개정(안) 또한 강사법의 시행관련 조문은 그 시행 유무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으며, 나머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되, 고등교육법의 강사법 시행이 폐기 또는 유예될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3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	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 강사,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p>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2.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u>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u></p> <p>② 연구년은 12개월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u>전향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p>③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④ 연구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강사' 라 함은 <u>고등교육법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u></p> <p>3.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이 규정은 <u>강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u>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u></p> <p>② 연구년은 12개월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u>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제 6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주대학교 기구에 국제화사업팀, 감사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의 장의 보임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구기관의 장 보임기준 변경내용은 현 직제규정상 연구기관의 장은 교내 인사로만 보할 수 있으나,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팀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먼저 아주 발전전략 국제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신규 국제화 프로젝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대학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제협력처 내 국제화사업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팀 신설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항목 중 보완이 시급한 자체감사 지표의 평가 보완과 더불어 현재 본교 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인 내외부 감사, 자체감사 등의 정기적 업무 및 최근 교육부, 국제청 등 관할 부서의 감사 증가 추세에 따라 본교에 감사부서를 신설하여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감사업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분절된 대학 취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정부지원금과 경기도 및 수원시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행 종합인력개발원을 대체하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및 가치확산 프로그램 전담조직으로 다산학부대학 산하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감사팀은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여 기업 대부분이 CEO 직속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획처 산하에 두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처장 이중섭 : 다른 대학들을 살펴보면 별도의 감사실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고 기획처 산하에 팀으로 두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감사업무가 일반기업에 비해 많지가 않고 자체감사보다는 주로 법인 감사와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어 큰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감사실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기획처 산하에 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팀 신설 내용 중 국제협력처 산하 국제화사업팀 신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협력처 산하에 국제교류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화사업은 국제교류팀의 업무분장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 동 연

이사

이 영 현

학교 기구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조직 규모에 비해 팀장 보직수가 많아 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팀을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현재 국제교류팀 팀장이 공석인데 내·외부 적합한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추진해 보시다가 해당 업무가 활발해졌을 때 학교에서 제안한 국제화사업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처장 이중섭 : 신설하고자 하는 국제화사업팀은 학생관리, 유학생 유치와 관리, 교환학생 파견업무, 해외 취·창업 및 해외 인턴십 지원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였던 연구협력 사업도 기관 대 기관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국제교류팀 인원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팀은 소규모로 구성하여 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 팀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상 협 :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추진력 있는 대학행정을 위한 조직 신설로 학교의 안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p>1. 일반대학원 : 대학원</p>	<p>제5조(기구)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p> <p>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p>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li> <li>2. 연구처장 :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u>종합인력개발원</u>,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학전문도서관</li> </ol>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u>다산학부대학</u> : 의사소통센터</li> <li>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li> <li>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li> <li>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li> <li>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li> <li>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li> <li>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li> <li>9.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li> <li>10. 중앙도서관 : 출판부</li> <li>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li> </ol>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li> <li>2. 연구처장 :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u>대학창조일자리센터</u>,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학전문도서관</li> </ol>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u>다산학부대학</u> : 의사소통센터, <u>소프트웨어교육센터</u></li> <li>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li> <li>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li> <li>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li> <li>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li> <li>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li> <li>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li> <li>9.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li> <li>10. 중앙도서관 : 출판부</li> <li>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li> </ol>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12. <u>종합인력개발원 :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u></p> <p>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및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을 둔다.</p> <p>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을 둔다.</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들 수 있다.</p> <p>제9조(대학교본부) ① 교무처는 교육 관련 행정 및 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및 교원팀을 둔다.</p> <p>② 연구처는 연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을 둔다.</p> <p>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p> <p>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제팀, 재무회계팀 및 시설팀을 둔다.</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u>대학발전기금 조성 업무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및 대학발전팀을 둔다.</u></p> <p>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p> <p>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국제교류팀을 둔다.</u></p> <p>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p> <p>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p>	<p>12. <u>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u></p> <p>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9조(대학교본부)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u>예산의 편성,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대학발전팀 및 감사팀을 둔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u>국제교류팀 및 국제화사업팀을 둔다.</u></p> <p>⑧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교류팀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제10조(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li> <li>2. 중앙전산원 : 정보시스템팀</li> <li>3. 평생교육원 : 교학팀</li> <li>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li> <li>5. <u>종합인력개발원</u> : 운영팀</li> <li>6. 어학교육원 : 운영팀</li> </ol> <p>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li> <li>2. 중앙전산원 : 정보시스템팀</li> <li>3. 평생교육원 : 교학팀</li> <li>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li> <li>5. <u>대학창조일자리센터</u> : 운영팀</li> <li>6. 어학교육원 : 운영팀</li> </ol>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① 연구기관에는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서 신설)</p> <p>② 지원기관에는 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③ 지원기관에는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11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① 연구기관에는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u>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u></p> <p>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다.</p> <p>④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u>부 칙</u></p> <p><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 7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임석철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5명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3명, 조교수 3명이 임용 제청되었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총 27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9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7명, 비정년외국인교원이 11명입니다. 각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재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교수 1명, 조교수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부교수 4명, 조교수 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옥 :** 연구실적과 이력내용을 살펴보니 훌륭한 분들을 모셔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대학교 임용심사 절차에 썬치커미티(search committee)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의료원장 유 희 석 :** 현재는 의료원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님들 중심으로 썬치커미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썬치커미티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흥부외과학교실의 함석진 조교수를 특별채용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의료원장 유 희 석 :** 이번에 특별채용한 교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흥부외과학교실의 함석진 조교수와 치과학교실의 김영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썬치커미티는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기능을 하여 스카웃 개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흥부외과와 치과 모두 결원이 많은 상황으로 채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용이 시급하였고, 특히 함석진 조교수는 흉부외과 교수님들 자체가 흔치 않은데다 폐이식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분 중에 한분이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교수님 또한 차기 주임교수 과장 보임을 염두해 두고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 김 성 진 : 아주대학교의 신규채용 건이 많은데 폭넓게 좋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써치커미티와 로드쇼 등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총장) 김동연 : 학교의 애로사항은 교원 T/O는 있는데 그만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합자가 없어서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말씀해주신 써치커미티나 로드쇼 등 시도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견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목표를 세웠기에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 신 희 택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기계공학과	강대식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기계공학과	최영만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전자공학과	홍송남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약학과	진효연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에너지시스템학과	정재성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교	경영학과	Ashley Gail Massey	조교수	2016.3.1 ~ 2018.2.28 (2년)
	약학과	Joo Hee Kim	조교수	2016.3.1 ~ 2018.2.28 (2년)
	교육대학원	신효정	조교수	2016.3.1 ~ 2018.2.28 (2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이환용	부교수	2015.12.31 ~ 2018.2.28 (2년 2개월)
	공공정책대학원	남양호	부교수	2016.3.1 ~ 2018.2.28 (2년)
	사이버보안학과	김강석	부교수	2016.3.1 ~ 2018.2.28 (2년)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홍부외과학교실	함석진	조교수	2016.1.1 ~ 2018.8.31 (2년 8개월)
	뇌과학과	장재탁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약리학교실	양시영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모정순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소화기내과학교실	김순선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신경과학교실	윤정환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외과학교실	이수형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산부인과학교실	공태욱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정훈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비뇨기과학교실	추설호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마취통증의학교실	김지은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영상의학교실	박민정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병리학교실	고영화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치과학교실	김영호	교 수	2016.3.1 ~ 정년

- 이상 본교 11명 / 의료원 15명 -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전자공학과	허준석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손경아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수학과	정의진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경영학과	김상일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경영학과	임현우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사회학과	노명우	부교수	2016.3.1 ~ 2022.2.28 (6년)
	사회학과	호정화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약학과	이동주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성환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기계공학과	윤백	부교수	2016.3.1 ~ 2019.2.28 (3년)
	전자공학과	Ran Rong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정크리스틴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다산학부대학	신종호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다산학부대학	Vincent Gilhooley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공공정책대학원	윤영식	부교수	2016.3.1 ~ 2019.2.28 (3년)
	산학협력단	이성엽	부교수	2016.3.1 ~ 2019.2.28 (3년)
	산업공학과	Limei Peng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전자공학과	Thaiyan Mahalingam	부교수	2016.3.1 ~ 2017.2.28 (1년)
	경영학과	Felver Troy Benjamin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영어영문학과	Donald Hearn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영어영문학과	Brad Crawford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다산학부대학	Scott Scattergood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Nicholas McGhie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Kevin Hawthorne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Joseph Ball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Angela Russell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Joshua Houser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의 료 원	병리학교실 이다근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중앙혈액내과학교실 이현우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신경과학교실 이진수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영상의학교실 최진욱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의학유전학과 손영배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이영수	조교수	2016.3.1 ~ 2019.2.28 (3년)
	외과학교실 김봉완	부교수	2016.3.1 ~ 2022.2.28 (6년)
	신경외과학교실 안영환	부교수	2016.3.1 ~ 2022.2.28 (6년)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성용	부교수	2016.3.1 ~ 2022.2.28 (6년)
	보건대학원 이은현	부교수	2016.3.1 ~ 2022.2.28 (6년)

- 이상 본교 27명 / 의료원 10명 -

### 제 8 호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이증섭 :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2016학년도 신입교원 채용계획은 당초 26명으로 이사회 승인받았으나, 정년트랙 2017학년도 정년퇴직 T/O 7명을 조기 임용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선점하고, 비정년트랙 채용탈락에 따른 결원인원 및 국고사업 등을 위한 정책배정 인원 7명을 추가하여 당초 계획대비 14명이 증가한 40명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합니다. 변경(안)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중앙일보평가 대비 교원확보율 개선이 시급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전임교원 확보율은 3년간 평균 64.27%로 지난 9월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평가를 받은 34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3년 평균 72.4%에 못미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하여 본교 전임교원확보율을 72.4%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교원 45명의 순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2015학년도 중앙일보 평가부터 교원확보율 지표계산식으로 변경되어 중앙일보 평가기준 교수확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명의 순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3.9% 27위 수준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고사업 지원을 위하여 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정년트랙 전임교원 초빙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임용제를 통하여 학과에서 원하는 우수인력을 섭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초빙일정을 앞당겨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14명의 신임교원 초빙인원을 추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교원확보를 개선을 위한 채용 계획(안)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9 호 아주대학교 약학관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약학관 증축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이증섭 : 본 안건은 아주대학교 약학관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약학대학 공간 수요 및 교내 연구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규모에서 지상 3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 면적은 약 92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약 58억 원으로 교비회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후 면적 및 건축비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학관 증축 추정 소요 예산, 주요 공간 활용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약학관 증축으로 부족한 강의실 및 연구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련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약학관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약학관 증축 승인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규 모	지상 3개층 증축	설계 후 일부 변동 가능
증축면적	연면적 : 920평 (현재 건물면적 : 연면적 1,200평 / 건축면적 315평)	
공사기간	2016.11~2017.8 (10개월)	
추정소요예산	공사비 58억원 (순공사비 51억원 + 설계감리 5.6억원 + 기타인허가 1.3억원)	

제 10 호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아주대학교 보직 중 사임한 다산학부대학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신임 다산학부대학장에 영어영문학과 한호 교수를 2015년 12월 17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에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일자
다산학부대학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한 호	2015.12.17부 (2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11 호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법인 도시지원시설 9-2 부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의료원 관계자분들과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된 추진사업은 아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의료·복지 복합단지 조성의 목표를 1단계 사업인 중증재활요양병원을 건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중증재활요양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면적은 약 1,180평, 연면적은 약 9,200평으로 공사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소요 예산은 약 66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용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현재 51.4%에서 78.4%로 27.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 장 : 의안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수익용건물 신축 및 자금조달 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의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상임이사 이영현 : 그러면 의안 제12호, 제13호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함께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하다.

▣ 수익용건물(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승인 내용

1. 신축 개요

구분	시설개요	비고
위치	광고 도시지원시설 9-2-①,②	
병상규모	500병상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면적	약 3,901㎡(약 1,180평)	
연면적	약 30,400㎡(약 9,200평)	
공사예정 기간	2016년 6월 ~ 2018년 1월(20개월)	설계, 인허가 기간 별도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일부 변경 가능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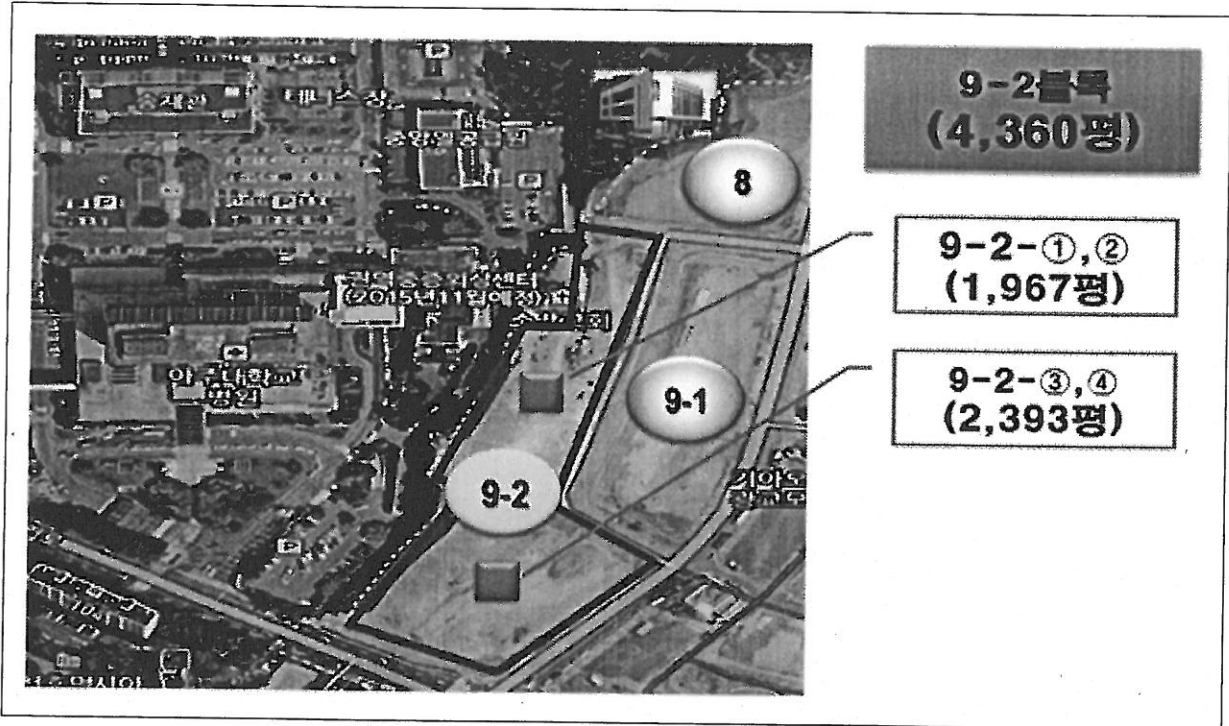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2. 신축 위치 : 광고 도시지원시설 9-2-①, ②



3. 신축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비고
설계비	1,864	1,864	-	-	
순공사비	48,946	19,578	19,578	9,789	
부대비	805	458	231	116	교통영향평가 등
의료장비	7,500	-	3,750	3,750	
제세공과금	3,262	-	-	3,262	취득세 등
운영준비금	3,000	-	-	3,000	
건설자금이자	1,181	307	874	-	토지분, 건물분
계	66,559	22,208	24,434	19,917	

4. 신축 재원 조달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비고
출자(건설자금이자)	232	123	109	-	토지분
출자(건축비)	11,765	4,417	4,115	3,233	기금 대체
금융권차입(건축비)	47,062	17,668	16,460	12,934	
리스차입(의료장비)	7,500	-	7,500	-	
계	66,559	22,208	28,184	16,167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제 12 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은 수익용건물의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한 기금 처분(안)입니다.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에 의료장비 75억원을 포함하여 약 6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약 588억원 중 117억원은 기금을 처분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대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기성에 따라 집행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하여 기금 처분을 3회에 걸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6년분 44억원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며 기금 대체 후 차액은 예금성 상품으로 재예치하고자 합니다. 예금의 수익사업 전환을 통해 매년 최소 3.5억원의 전입금 수입이 증가하여 현재의 예금 이자수입 대비 연간 최소 1.5억원의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함께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하다.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 내용**

**1.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 처분 (건축비)	금융권 차입 (건축비)	리스차입 (의료장비)	기타	합계
금액	11,765	47,062	7,500	232	66,559

※ 총 기금처분 금액 11,765백만원은 건축 기간 동안(2016년~2018년) 3차에 걸쳐 기금 처분하여 건축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 연도별 기금 처분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1차)	2017년(2차)	2018년(3차)	합계
기금 처분(건축비)	4,417	4,115	3,233	11,765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 3. 처분대상 기금현황 (1차)

(단위 : 원)

기관명	계좌번호	예치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기업은행	336-068956-12-019	2015. 3. 24	2015. 12. 24	1.89%	4,500,000,000
				실 처분 예정액	4,417,000,000

### 4.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1차)

- ▶ 처분 예정 금액(1차) : 4,417,000,000원
-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 및 차액 재예치

### 제 13 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 받의.

상임이사 이영현 : 중증재활요양병원의 공사대금 약 588억원 중 117억원의 기금 처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471억원은 기채를 통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기채 또한 교육부와 협의하여 공사 기성에 따라 3회에 걸쳐서 집행하고자 하며 기채예정액 총 약 471억원 중 1차로 약 177억원, 2차로 약 165억원, 3차로 약 129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1차 기채액 약 177억원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기채처는 신한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본 건을 위해 설립되며 회계적으로 신한은행의 연결기업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대우학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 동일하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약 900억을 조달한 사례가 있는 대출 구조입니다. 담보조건은 무담보 신용이고 금리조건은 CD(3개월)+1.25%로 2015.11.30 기준으로 2.87% 수준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1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법인회계에서 상환될 예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13년 기준으로 원금 약 471억원에 이자 약 14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중증재활요양병원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의안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안전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육 : 병원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겸 외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 장 : 오랜기간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외부에서 의견도 받아 보았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은 담보제공이 제한적인데 신한은행에서 무담보 기채조건을 제시하여 금리인상 등 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함께 검토한 의료원과 내·외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 문 길 주 : 오랜기간 사업을 구상하였고 자금조달 및 상황에 따른 재정적 여력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의안 제11호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 의안 제12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13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 3개 안건 모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3개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안 제11호 대우학원 수익용건물 신축 승인(안), 의안 제12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13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기채 승인 내용

구분	기채 승인 내용
사 업 명	중증재활요양병원(수익용 건물) 신축
기 채 처	신한은행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기 채 액	17,668,000,000원
금리조건(수수료 제외)	CD(3개월)+1.25% (2015.11.30.기준 2.87%)
담보조건	무담보 신용
상환방법	신용대출 13년 (2년 거치 11년 상환)
상환재원	법인회계

#### 제 14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김동현

이사

이영현

본 법인 임원 중 김선용 이사가 2016.2.6부로 임기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후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김선용 이사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겠습니까?  
( 김선용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

이 사 장 : 김선용 이사의 후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그 동안 대우학원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김선용 이사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김선용 이사의 연임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김선용 이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중 김선용 이사 본인을 제외한 10인의 찬성으로 김선용 이사를 2016.2.7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김선용 이사 회의장으로 입장하다. )

이 사 김 선 용 :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을 승낙합니다.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문 길 주	2012.3.31 ~ 2016.3.30		이 사	문 길 주	2012.3.31 ~ 2016.3.30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김 동 연

이 사 이 영 현

현행				변경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주인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사	주인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사	김동연	2015.6.4 ~ 2019.6.3		이사	김동연	2015.6.4 ~ 2019.6.3	
이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김선용	2012.2.7 ~ 2016.2.6		이사	김선용	2016.2.7 ~ 2020.2.6	
감사	문휘창	2014.5.14 ~ 2017.5.13		감사	문휘창	2014.5.14 ~ 2017.5.13	
감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감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장 : 제32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저와 김동연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동연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1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10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5 년 12 월 17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김 성 진	김성진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신 희 택	신희택
이 사	주 인 옥	주인옥
이 사	김 동 연	김동연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배 홍 기	배홍기